

실적평가금 지급규칙

실적평가금 지급규칙

제 정 2007. 07. 16.
전문개정 2008. 11. 06.
개 정 2012. 06. 08.
개 정 2015. 04. 30.
개 정 2018. 10. 31.
개 정 2019. 06. 25.
개 정 2019. 1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수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실적평가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실적 평가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구분과 지급대상)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실적평가금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원실적평가금은 직원평가규칙 제8조에 의거한 근무실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적평가금을 말한다.
2. 기관실적평가금은 연구원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년도 임기인 전·현직 원장에게 지급하는 실적평가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25.>

②제1항의 실적평가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실적평가금 지급대상 <개정 2012.6.8., 2015.4.30., 2018.10.31.,

2019.6.25.〉

구 분	직원실적평가금		기관실적평가금
	개인평가 성과금	경영평가 성과금	경영평가 성과금
대 상	연구본부장, 소장, 연구직, 정보직,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청소원, 부설기관)		원 장

2. 직원실적평가금은 직원평가규칙에 의거,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연구본부장과 소장의 경우 연구실적 및 직무관련 실적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하며 원장은 평가 비대상자 가운데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5.4.30., 2018.10.31.〉
3.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제 10조에 의거한 근무실적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자(정년퇴직) 당해에 지급하는 실적평가금은 전환전 직급 평균지급액을 아래 산식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6.25., 개정2019.11.18.〉

구 분	직원실적평가금 유형별 근무기간 환산	
	개인평가성과금(당해년도)	경영평가성과금(전년도)
산 식	평가기간 근무일 / 근무평가 대상기간 (전년도 11월 ~ 당해년도 10월)	전년도 근무기간 / 경영평가 대상기간 (전년도 1월 ~ 12월)

제2장 실적평가금 지급

제4조(지급방법) ①제3조의 규칙에 의거 실적평가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 대상자의 직별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되, 기준액의 산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실적평가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8., 2015.4.30., 2018.10.31., 2019.6.25., 2019.11.18.〉

구 분	직원실적평가금			기관실적평가금
	연구직, 정보직,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청소원)	공무직 (부설기관)	연구본부 장, 소장	전·현직 원장
지 급 기 준	근무실적평가 등급으로 정함		각 사업운영 지침 및 사업인건비 예산에 따른다	연구실적 및 직무관련 실적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함
	S등급	(기준액) × 1.25		
	A등급	(기준액) × (1.25~1)		
	B등급	(기준액) × (1~0.75)		
	C등급	(기준액) × 0.75		연구원 경영평가결과 및 재임기간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함

제5조(지급일) 실적평가금의 지급일은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6.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4.3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실적평가금 지급규칙

부 칙 <2018.10.3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2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1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